



# 이 사 회 규 정

**CJ**주식회사

# 이사회규정

제정	1968.09.05				
개정	1994.07.01	1995.10.01	1998.03.26	1999.04.07	2000.03.11
	2000.11.14	2001.04.10	2001.09.11	2004.10.12	2005.12.09
	2007.09.03	2012.05.15	2012.12.11	2017.03.24	2018.12.20
	2021.12.17				

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적용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3조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## 제4조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## 제5조(의장)

-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.
- ② 이사회 의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인 회장, 부회장, 경영리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전항의 순위는 대표이사 및 주주총회 의장 유고시에도 준용한다.

## 제6조(회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 제6조의2(소집)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의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의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.

## 제7조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 제 397조의 2 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) 및 제398조 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의 결정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-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 제8조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### 1.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의안에 관한 사항

- 가. 주주총회의 소집
- 나. 영업보고서의 승인
- 다. 재무제표의 승인 (상법 제 449조의2 제1항의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.)
- 라. 정관의 변경
- 마. 자본의 감소
- 바.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사.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.
- 아.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자.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
- 차.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- 카. 현금, 주식, 현물배당 결정 (정관에 의해 상법 제 449조의 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.)
- 타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파. 이사의 보수
- 하.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### 2.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

- 가. 분기배당의 결정
- 나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
- 다. 공동대표의 결정
- 라. 지점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마.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리업무의 범위
- 바.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사.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
- 아.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
- 자. 준법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
- 차.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의 결정
- 카. 분할, 분할합병, 흡수합병 및 신설합병의 주주총회에 대한  
보고에 갈음하는 공고

### 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가. 자기자본의 100분의 2.5이상의 타 법인출자, 출자지분의 처분  
또는 해외직접투자
- 나.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
- 다. 자산총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및 처분
- 라. 신주의 발행
- 마.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의 위임
- 바. 준비금의 자본전입
- 사.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
- 아.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차입
- 자. 자기자본의 100분의 2.5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
- 차.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카. 자기주식의 소각

### 4. 기 타

- 가. 상법 제397조의2 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) 및  
제398조 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대한 승인
- 나. 이사의 競業 승인
- 다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2 및 동법시행령

제17조의8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승인  
라.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
마.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의되는 사항이 아닌 여타사항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이를 결정 집행한다.

### 제9조(위원회)

- ①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1. 감사위원회 :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  2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: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후보를 추천한다.
  3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- ② 위원회는 법령,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, 정관 및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.

### 제9조의2(이사회에의 보고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보고받은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### 제10조(이사 아닌 자의 출석)

- ①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사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케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 또는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 제11조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의 사무전반을 관장한다.

### 제12조(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### 제13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### 부 칙

1. 이 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1998년 3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1999년 4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2000년 3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6.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7. 이 규정은 2001년 4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8. 이 규정은 2001년 9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9.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10. 이 규정은 2005년 12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11. 이 규정은 2007년 9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12. 이 규정은 2012년 5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13.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14.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15.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 제1항의 개정은 본 규정 개정안 시행일 전에 선임된 이사회 의장의

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16.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